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15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황운하·조 국·김준형

이해민 · 김재원 · 강경숙

김선민 • 신장식 • 정춘생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를 "대응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처리자의 <u>대응조치</u>	4 <u>대응조치</u>		
및 피해 구제절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